

SH공사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침

제정 2006. 1. 9

개정 2010. 9. 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용지업무규정」 제17조에 따른 이주대책과 생활 대책,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주 및 생활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또는 상위 규정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주대책대상자”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생활대책대상자”라 함은 당해 사업지구내 공장·종교시설 및 유치원시설 운영자, 영업손실 보상대상자, 농업손실 보상대상자, 축산업손실 보상대상자 등을 말한다.
3. “이주자 주택”이란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분양아파트를 말한다.
4. “주택 특별공급”이라 함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준하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이하 ‘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규칙에 따른다.

5. “무허가 건축물”이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로서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향측판독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포함) 또는 재산세납부대장 등 관할구청의 공부상 등록된 ‘등록무허가 건축물’과 미등록된 ‘미등록무허가건축물’로 구분한다
6. “동일인”이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와 대상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 세대원중 직계 존·비속(기준일 이후 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을 말한다

제4조(이주 및 생활대책의 수립)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업을 상실한 자 중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 받고, 토지 등을 스스로 인도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주 및 생활대책은 대상자의 사업에 대한 협력정도 등에 따라 수립 내용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5조(기준일) ① “기준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의 선정기준일로서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제27조 각 호에서 정한 해당일을 말한다.

② 이주 및 생활대책의 기준이 되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의 면적 및 용도는 기준일 현재의 공부에 의한다.

제6조(공급가격) ①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이주자 주택 또는 택지의 공급은 에스에이치공사 일반 분양 또는 택지공급 가격에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산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주택은 에스에이치공사 일반분양 또는 일반임대 가격으로 공급한다.

③생활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상가, 아파트형공장, 종교시설용지, 유치원용지, 공장용지, 상가용지 등의 공급은 에스에이치공사 일반분양 상가 및 택지 공급가격으로 공급한다.

제2장 이주대책 등

제7조(주택 및 농지 소유 농민)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지구내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고,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게는 당해지구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이주자 주택 입주권 또는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이주자 주택 입주권 또는 230제곱미터이하 단독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요건중 공부상 허가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공부상 허가주택이 있는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115제곱미터이하 이주자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 다만, 등록무허가건축물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단독택지는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지구 토지이용계획상 단독택지가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공급하며, 공급물량이 부족할 경우 3대 이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일 경우 1순위, 2대 이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일 경우 2순위, 1대 일 경우 3순위로 우선 공급순위를 정하고, 동일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115제곱미터이하 주택 입주권의 경우 당해지구 주택건설계획에 정해진 경우에 한한다.

제8조(자기 토지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지구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이주자 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 다만,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이주자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요건중 공부상 허가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공부상 허가주택이 있는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115제곱미터이하 이주자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 다만, 등록무허가건축물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요건중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는 당해 주택외에 이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특별공급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115제곱미터이하 주택 입주권의 경우 당해지구 주택건설계획에 정해진 경우에 한한다.

제9조(타인 토지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지구내 타인 토지상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이주자 주택 입

주권을 부여한다. 다만,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당해 지구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이주자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요건중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는 당해 주택외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특별공급한다.

제10조(무허가건축물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지구내 등록무허가건축물을 소유 및 거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이주자 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 다만,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이주자 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요건중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는 당해 등록무허가건축물외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특별공급한다.

③ 당해지구내 미등록무허가건축물을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당해지구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특별공급한다. 다만,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특별공급한다.

④ 제3항의 미등록무허가건축물 여부는 관할 구청장이 확인시 대상자로 본다.

제11조(기준일 이후 취득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자) 기준일 이후에 당해지구 주택을 취득하여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소유 및 거주한 자로서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구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주에게는 당해지구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특별공급한다. 다만,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특별공급한다.

제12조(토지 협의양도자)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공급규칙 제19조 제3항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지구내 토지를 1천제곱미터이상 소유하고, 그 소유토지 전부(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를 포함한다)를 협의양도한 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는 당해지구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특별공급한다.

② 제1항의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가 여러개의 필지인 경우에는 각 소유토지를 합한 면적(지분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세입자) ①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구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등재하고 거주하다가 자진 이주한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는 당해지구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특별공급한다.

② 제1항의 임대아파트는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구에서 계속 거주한 동일 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며, 세대원수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에 한한다.

가. 세대원수 6인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다만, 동일 면적에 경쟁이 있을 경우 제10조의 미등록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한 후 전산 추첨에 의한다.

나. 세대원수 4인이상 5인이하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다. 세대원수 3인이하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이하

③ 제1항 및 제2항의 면적과 달리 건설되는 지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세대원수를 기준으로 면적을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3장 생활대책

제14조(종교시설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지구내 종교시설소유자(임차포함)로서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660제곱미터이하의 종교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당해지구내 종교시설은 중앙정부 관련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법인에 등록되고 종교집회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할 용도의 택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종교시설 운영자로 당해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1순위, 종교시설 운영자로 당해 건축물 소유자 2순위, 임차 종교시설 운영자 3순위, 종교재단 또는 대표자 명의 소유 토지로서 종교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4순위로 우선 공급한다.

④ 종교시설용지를 공급받지 못한 종교시설 운영자에게는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중(이하 ‘상업용지 등’이라 한다) 16.5제곱미터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공급할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제3항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 공급한다. 다만,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전산추첨에 의하여 공급하되, 상업용지 등 지분공급은 당해지구내 토지이용계획상 정해진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영업손실 보상대상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지구내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필하고 그 내용대로 영업한 자로서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의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상업용지 등의 16.5제곱미터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상업용지 등 지분 공급은 당해지구내 토지이용계획상 정해진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요건중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없는 영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할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허가·등록·신고 등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1순위, 건축물을 소유하고 허가·등록·신고 등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2순위, 임차영업자로 허가·등록·신고 등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3순위, 사업자등록 미필업자 4순위로 우선 공급순위를 정하고,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전산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미필업자 중 위법에 기인한 영업은 제외한다.

제16조(농업손실 보상대상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지구내에서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영위하던 자로 생계

수단을 상실한 자로서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구의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상업용지 등의 16.5제곱미터이하 지분을 공
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상업용지 등 지분공급은 당해지
구내 토지이용계획상 정해진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할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농지상실 농민
1순위, 임차농민 2순위로 우선 공급순위를 정하고,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전산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

제17조(축산업손실 보상대상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
재까지 당해지구내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축산업을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산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축사 등 15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양봉의 경우 동시설에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에
한함)을 갖추고 영위하던 자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
에게는 당해지구의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상업용지 등의 16.5제곱미터이
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상업용지 등 지분
공급은 당해지구내 토지이용계획상 정해진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기소유 토지상
축산업자 1순위, 타인소유 토지상 축산업자 2순위로 우선 공급순위를
정하고 동일순위 경쟁시는 전산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

제18조(유치원시설 운영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지구내에서 유치원시
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관할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한 자로
서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유치원용지를 공
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지구내 유치원용지 공급물량이 부족할 경우에

는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유치원 운영자 1순위, 건축물을 소유한 유치원 운영자 2순위, 임차유치원 운영자를 3순위로 우선 공급순위를 정하고 동일순위 경쟁시는 전산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용지공급은 당해지구 토지이용계획상 유치원 용지가 정해진 경우에 한한다.

제19조(공장 운영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지구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인근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에의 우선분양을 알선하거나, 당해 지구의 아파트형공장 입주권 또는 공장용지(이하 ‘공장용지 등’이라 한다)를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미등록공장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공장용지 등의 공급은 당해지구내 아파트형공장 건설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상 공장용지가 정해진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지구내 공장용지 등 공급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공장 운영자 1순위, 건축물을 소유한 공장 운영자 2순위, 임차공장 운영자 3순위로 우선공급순위를 정하고 동일순위 경쟁시 전산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20조(협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수립한 이주대책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확정된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내용을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수령자는 공고로 갈음한다.

제21조(이주 및 생활대책의 신청과 구비서류) ① 이주 및 생활대책의 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구비서류는 별표1과 같다.

제22조(유의사항) ① 이주 및 생활대책 부여는 접수기간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는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②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는 접수된 서류의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확정하고, 대상자 확정 통보는 개별통지하며,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 접수증 또는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은 발급하지 않는다.

- ③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하며, 동일인이 각각의 동일 대책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 가지만 선택 공급한다.

- ④ 동일인이 당해지구에 2주택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한다.

- ⑤ 주택 특별공급은 1주택을 2인이상이 공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한하여 공급하고, 2동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무허가건축물확인원 포함)상 하나의 단독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그 중 1인에 대해서만 특별 공급하며, 다른 공유자는 포기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⑥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대상자별, 유형별 공급순위 중 동일순위에서는 대상자별, 유형별로 동등한 순위로 간주하여 공급하고, 동일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한다.
- ⑦ 생활대책은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아니하거나 자진 이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대책에서 제외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토지 등을 스스로 인도한 경우에는 최후순위로 9.9제곱미터이하의 상업용지 등 지분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에게 공급할 각각의 용지는 토지이용계획에 정해진 경우에 한한다.
- ⑧ 생활대책 대상자에게 공급할 각각의 공급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전산추첨에 의하고 추첨에서 탈락된 자는 생활대책에서 제외한다.
- ⑨ 토지의 공급조건, 공급가격 등은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 ⑩ 소유자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급하지 않는다.
- ⑪ 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
- ⑫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의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즉 입주권의 양도, 양수는 일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96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⑬ 이주자 주택(주택 특별공급 포함) 아파트 및 상가, 상업용지 등의 지분 공급은 전산 추첨한다.
- ⑭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거나 신청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때

에는 각각의 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에 의거 고발조치한다.

⑮ 협의양도자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일전까지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를 의미하고, 지장물 등은 당해지구 밖으로 자진 이전하여야 한다.

⑯ 제7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 내지 제19조에서 규정하는 “협의계약”이라 함은 당해지구내 건축물 2동이상과 토지 2필지 이상일 경우 일괄 계약 함을 말한다.

⑰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세입자의 경우 동일주택의 거실,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만 달리하여 거주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지 않고 주된 가구의 세대원으로 합산한다

부 칙(2006. 1. 9)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은 서울특별시택지개발사업이주대책기준과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이주대책기준에 의하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기준 시행일전에 기 진행중인 사업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③ (적용특례) 이 기준에 불구하고 택지 및 도시개발구역이 100만제곱미터(30만평) 이상이거나 지구특성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보완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은 형평의 원칙등을 감안하여 공급가격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기타) 이 기준의 상위 법령 또는 지침 변경(개정)시 이 기준에도 준

용한다.

부 칙(2010. 9. 3)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확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주대책대상자 적용례) 제7조, 제8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한다.
- ③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적용례) 제8조 제3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제3항, 제11조 내지 제13조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한다.
- ④ (생활대책대상자 적용례) 제14조 내지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는 생활대책대상자로 한다.
- ⑤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전에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⑥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 특성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주 및 생활대책을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 표 1]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수 량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및 각서(소정양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협의개시일이후 발급분 주소변동사항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증 지참 ○ 인감도장 지참 ○ 무주택 서약서(주택 특별공급대상자 공통) 	각1통
허가건축물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및 토지등기부 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각1통
등록무허가 건축물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 ○ 과세증명서 	각1통
미등록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무허가건축물 입증서류('89.1.24이전 주택의 관할 구청장 확인서류) ○ 미등록무허가 건축물 소유권 입증서류(공중매매계약서 등) 	각1통
1천㎡ 이상 토지협의양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각1통
세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무허가건축물확인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1통
지구외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무허가건축물확인원) 	각1통
종교시설 대 상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법인(중앙정부 관련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법인) 등록증 ○ 법인설립허가서 ○ 재직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임차종교시설에 한함) ○ 지구내 집회(법회)개시 입증서류 ○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무허가건축물확인원) 	각1통
영업(공장, 유 치원 등) 손실 보상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무허가건축물확인원) ○ 임대차계약서(임차영업자에 한함) ○ 허가·등록 신고필증(공장등록증 등)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등록증사본(영업개시 입증서류) ○ 관할 교육청 설립 인·허가서(유치원 운영자에 한함) 	각1통
농업 손실 보상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 영농입증서류(농지원부, 자경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등) ○ 농지임차 입증서류(농지임차계약서 등) 	각1통
축산업손실 보상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 ○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토지 및 건축물 임차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등) 	각1통